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44

발의연월일: 2021. 1. 26.

발 의 자: 송옥주·김민철·김성주

송재호・양경숙・최종윤

이성만 나이순 · 맹성규

전혜숙 · 안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 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의안에 대하여 비용 수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하고 있으며, 발의할 때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그 결과를 회신받은 추계서를 다시 의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비용추계 요구 및 제출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 록 함으로써 비용추계서 제출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 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장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그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심사 전에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